|  |  |  |
| --- | --- | --- |
| **국가외환관리국 화물무역 수출소득**  **국외예치 관리시행 문제에 관한**  **통지**  환발[2010]67호  국가 외환관리국의 각성, 자치구, 직할시 지국, 외환관리부서, 심천, 대련, 청도, 하문, 영파시 지국, 각 지정 외환업무 내자(中資)은행 본점:  국내기업의 자금 사용효율을 높이고 무역투자를 한층 더 간편화 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의 유관 규정에 근거하고 시범을 거쳐 국가외환관리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전국에서 《화물무역 수출소득 국외예치 관리 임시 방법》(이하 《임시 방법》이라 약칭 함, 첨부1 참조)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 《임시 방법》과 조작 규칙(첨부 2 참조)을 발부하며 유관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각 지국, 외환관리부서는《임시 방법》에 따라 수출소득의 국외예치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적시에 관할구역의 분지 기구 및 수출소득 국외예치를 신청한 기업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정책 홍보를 강화하며 업무의 진행 상황을 세밀히 주시하고 정책의 전국적인 보급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하여 해결한다.  2. 시범지역 외환관리국의 심사 허가를 받은 수출소득 국외예치 시범기업은《임시 방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외계좌의 수지정보 보고방식 등에 대해 조정한다.  3. 각 지국, 외환관리부서는 매월 전 5개 근무일 이내에 전월 관할구역의 수출소득 국외예치 관련 정보를 국가외환관리국 경상항목관리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각 지국, 외환관리부서는 본 통지를 수취한 후 신속히 관할지역의 중앙지국, 지국, 외자은행, 지방성 상업은행과 관련 단위에 배포한다. 각 내자(中資)외환지정은행은 본 통지를 수취한 후 적시에 소속 되여 있는 분지 기구에 배포해야 한다. 집행 중 문제가 있을 경우 적시에 국가외환관리국에 피드백 한다.  연락번호: 010-68402450  이에 통지하는 바이다.  첨부:  1. 화물무역 수출소득 국외예치 관리 임시 시행방법  2. 화물무역 수출소득 국외예치 관리 임시 시행방법 조작 규정  2010년 12월 27일  첨부1. 화물무역 수출소득 국외예치 관리 임시 시행 방법  첨부2: 방법첨부 1 계좌수지정보 보고협의  첨부3: 방법첨부 2 수출외환수금 국외예치 등기표.  첨부4: 방법첨부 3 수출소득 국외예치자격 심사 증명.  첨부5: 방법첨부 4 수출소득 국외예치 수지정황 보고표  첨부6: 화물무역 수출소득 국외예치관리 임시 시행 방법 조작 규정  <http://www.safe.gov.cn/model_safe/laws/pic/20101231170944153.doc>  첨부1  **화물무역 수출소득 해외예치 관리**  **잠행방법**  **제1조** 국내 기업의 자금사용 효율을 제고하고 무역의 편리화를 한층 더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와 기타 관련 외환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내 기업은 본 방법에 의거하여 진실되고 합법적 교역배경을 가진 화물무역 수출소득(이하 수출소득으로 약칭 함)을 국외에 예치할 수 있다. (홍콩, 대만, 마카오지역 포함. 이하 동일)  **제3조** 국내 기업이 수출소득을 국외에 예치할 경우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수출 수입원을 구비하고 국외에 본 방법의 규정에 부합되는 지불수요가 있다.  (2) 최근 2년 이내 외환관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없다.  (3) 수출소득 국외예치에 완전한 내부 단속 제도가 있다.  (4) 국가 외환관리국 및 지국, 외환관리부서가 규정한 기타 조건에 부합한다.  **제4조** 규정에 부합하는 국내 기업그룹은 그룹 본사 혹은 한 개의 참여회사를 주최기업으로 지정하여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전체 국내 그룹참여기업이 국외에 예치한 수출소득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입과 지출 실행을 책임진다.  **제5조** 국내 기업이 수출소득 예치에 사용할 국외계좌(이하 국외계좌라 약칭 함)를 개설하기 전, 계좌 개설할 은행을 선정하고 해당 은행과 《계좌수지정보보고협의》(이하 《협의》라 약칭 함, 첨부1 참조)를 체결하고 소재지의 국가외환관리국 지국(이하 외환관리국이라 약칭 함)에 계좌개설 등기를 해야 한다.  **제6조** 국내 기업그룹이 집중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는 경우 주최기업은 소재지 외환관리국에 가서 계좌개설 등기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주최기업과 성원기업이 부동한 외환관리구역에 소속된 경우 성원회사는 사전에 소재지 외환관리국에 가서 자격등록을 해야 한다.  **제7조** 국내 기업은 아래의 자료를 소지하고 외환관리국에 가서 계좌개설 등기를 해야 한다.  (1) 법인대표 혹은 대리인이 서명하고 기업 공인을 날인한 서면신청서. 처음 등기 시 서면신청서에는 국내 기업이 실제 수요에 근거하여 확정한 연도 누적 수출소득 국외저금 규모를 설명해야 한다.  (2) 《수출소득 국외예치 등기표》 (첨부2 참조)  (3) 국내 기업과 국외 계좌개설은행이 체결한 <<협의>>  (4) 국내 기업이 수출소득을 국외에 예치하기 위해 제정한 내부 단속 제도(처음 등기 시 제출)  (5) 집중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는 경우 처음 등기 시 참여성원회사의 정황설명과 참여성원회사의 채권, 채무 및 상응하는 회계기장관리방법 혹은 규정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성원회사와 주최기업이 부동한 외환관리국의 관할지역인 경우 성원회사는 소재지 외환관리국이 발급한 《수출소득 국외예치자격 등기표》를 함께 제출한다.  (6) 국가외환관리국 및 지국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  **제8조** 국내 기업이 국외계좌 개설 후 규정된 기한 내 계좌번호와 계좌의 화폐종류를 소재지 외환관리국에 등기해야 하며 국외계좌정보에 변경이 발생할 때에도 규정된 기한 내 변경된 정보를 소재지 외환관리국에 등기해야 한다.  **제9조** 동일한 국내기업이의 국외 개설계좌는 5개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이고 국외계좌 수량을 증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재지 외환관리국의 심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국내 기업 국외예치의 연도 누적자금은 등기된 수출소득 국외예치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국외예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내기업은 소재지 외환관리국에 변경 등기를 진행해야 한다.  **제11조** 국외계좌의 소득은 아래를 포함한다.  (1) 수출소득  (2) 계좌 자금의 이자 취득  (3) 외환관리국이 허가한 기타 소득  지출 범위는 이하를 포함한다.  (1) 화물 무역항목의 지출  (2) 국외로부터 도급 맡은 공사, 중개 수수료, 운송보험료 항목의 지출 비용  (3) 국외계좌와 관련되는 국외 은행의 지출 비용.  (4) 외환관리국의 심사 허가를 받거나 등기한 자본항목의 지출  (5) 국내로의 회송  (6) 국가 외환관리국의 규정에 부합되는 기타 지출.  **제12조** 국외계좌의 수입과 지출은 진실하고 합법적인 교역기초를 구비해야 하며. 중국 및 계좌 개설한 국가 혹은 지역의 관련 법률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13조** 국내 기업은 규정된 양식(첨부4참조)에 따라 소재지 외환관리국에 수출소득 국외예치의 수입과 지출정황을 사실대로 보고해야 하며 매월 최소 한번을 보고해야 한다.  국외에 예치한 자금 운용이 중대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국내 기업은 적시에 소재지의 외환관리국에 보고해야 한다.  **제14조** 국내 기업은 국외계좌 개설은행에 《협의》의 약정에 따라 월별로 소재지 외환관리국이 지정한 주소에 국외계좌 잔고확인서를 우편으로 부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제15조** 국내 기업이 보고한 국외예치 수출소득의 수입과 지출정보는 말소 혹은 심사수속 처리에 사용할 수 있다. 외환관리국은 국내기업이 보고한 관련정보와 국외계좌 개설은행이 발급한 잔고확인서에 근거하여 국외계좌의 수입과 지출의 진실성에 대해 합리적인 심사를 진행한다.  **제16조** 국내기업은 스스로의 경영수요에 근거하여 수출소득 국외저금의 기한을 확정하거나 국내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국내기업은 국외계좌 폐지 후 규정된 기한 내 국외계좌 개설은행의 계좌 폐지통지서를 소지하고 소재지 외환관리국에 등기해야 한다.  **제17조** 국내기업이 본 방법의 제20조 제(1), (2), (3), (4)항에서 규정한 행위가 존재할 경우 외환관리국은 기한 내 국외계좌를 폐지하도록 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계좌의 잔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8조** 국내 기업그룹이 국외에 예치한 수출소득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실행할 경우 참여성원기업의 채권, 채무관리 및 상응하는 회계기장업무를 잘 수행해야 하며 참여성원회사의 채권, 채무상황 및 금액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  국외의 수출소득을 국내로 회수할 경우 각 성원회사의 예금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성원회사 국내의 경상항목외환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제19조** 국내기업은 국외계좌의 수입 및 지출과 관련된 교역계약, 증빙 등 서류를 참조용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외환관리국은 국내기업의 수출소득 국외예치업무에 대해 비현장검측을 진행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에 대해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 국내기업이 아래의 행위가 존재할 경우 외환관리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외환관리국에 등기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국외에서 계좌 개설하고 자금을 예치하는 경우.  (2) 거짓자료를 제공하여 국외계좌를 개설할 경우.  (3) 본 방법이 규정한 계좌수지범위를 초과하거나 본 방법의 기타 규정을 위반하고 국외계좌를 사용한 경우.  (4) 규정에 따라 국외계좌의 관련 정황과 데이터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5) 규정에 다라 회수하거나 국외계좌를 폐지하지 아니한 경우.  (6) 본 방법이 규정한 기타 행위를 위반한 경우.  **제21조** 국가 외환관리국은 국제수지형세와 외환관리의 필요에 따라 수출소득 국외예치의 자격조건, 예치규모, 기한 혹은 회수요구 등에 대해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제22조** 법에 따라 오프쇼어 뱅크(Offshore Bank) 업무 경영자격을 취득한 국내은행의 오프쇼어 업무부서는 외국은행으로 간주하고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전항에서 언급한 오프쇼어 뱅크 업무부서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국내기업의 수출소득을 흡수하며 외채통계에 기입한다. 상응하는 오프쇼어 계좌와 국내 기타 계좌의 자금거래는 국제간 거래에 따라 관리하고 규정에 따라 국제수지통계 신고를 처리한다.  **제23조** 대외무역경영권을 구비한 개인과 보호관세감독관리구역의 기업은 본 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24조** 본 방법의 해석은 국가외환관리국이 책임 진다.  **제25조** 본 방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실행한다. 과거의 유관 규정이 본 방법과 서로 저촉될 경우 본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첨부1. 《계좌수지정보 보고협의》  첨부2. 《수출소득 국외운용 등기표》  첨부3. 《수출소득 국외운용자격 등기표》  첨부4. 《수출소득 국외운용수지정황 보고표》 |  | **国家外汇管理局关于实施货物**  **贸易出口收入存放境外管理**  **有关问题的通知**  汇发[2010]67号  国家外汇管理局各省、自治区、直辖市分局、外汇管理部，深圳、大连、青岛、厦门、宁波市分局，各中资外汇指定银行总行：  为提高境内企业资金使用效率，进一步促进贸易投资便利化，根据《中华人民共和国外汇管理条例》的有关规定，在试点基础上，国家外汇管理局决定自2011年1月1日起在全国范围内实施《货物贸易出口收入存放境外管理暂行办法》（以下简称《暂行办法》，见附件1）。现将《暂行办法》与操作规程（见附件2）下发给你们，并就有关问题通知如下：  一、 各分局、外汇管理部应当遵照《暂行办法》，认真开展出口收入存放境外全国推广工作，及时对辖内分支机构及申请开展出口收入存放境外业务的企业进行培训，加强政策宣传，密切跟踪、认真研究解决政策在全国推广过程中发现的问题。  二、 试点地区已经外汇局核准的出口收入存放境外试点企业可根据《暂行办法》规定，对境外账户收支信息报告方式等进行调整。  三、 各分局、外汇管理部应当于每月前5个工作日内将上月辖内出口收入存放境外相关情况报国家外汇管理局经常项目管理司。  各分局、外汇管理部收到本通知后，请尽快转发所辖中心支局、支局、外资银行、地方性商业银行和相关单位。各中资外汇指定银行收到本通知后，应及时转发至所属分支机构。执行中如遇问题，请及时向国家外汇管理局反馈。  联系电话：010-68402450  特此通知。  附件：  1.货物贸易出口收入存放境外管理暂行办法  2.货物贸易出口收入存放境外管理暂行办法操作规程  二〇一〇年十二月二十七日  附件一：货物贸易出口收入存放境外管理暂行办法  附件二：办法附件1 账户收支信息报送协议  附件三：办法附件2 出口收汇存放境外登记表  附件四：办法附件3 出口收入存放境外资格审核证明  附件五：办法附件4 出口收入存放境外收支情况报告表  附件六：货物贸易出口收入存放境外管理暂行办法操作规程  <http://www.safe.gov.cn/model_safe/laws/pic/20101231170944153.doc>  附件1  **货物贸易出口收入存放境外管理**  **暂行办法**  **第一条** 为提高境内企业的资金使用效率，进一步促进贸易便利化，根据《中华人民共和国外汇管理条例》及其它相关外汇管理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境内企业可依据本办法将具有真实、合法交易背景的货物贸易出口收入（以下简称出口收入）存放境外（含港澳台地区，下同）。  **第三条** 境内企业将出口收入存放境外应当具备下列条件：  （一）具有出口收入来源，且在境外有符合本办法规定的支付需求；  （二）近两年内无违反外汇管理规定行为；  （三）有完善的出口收入存放境外内控制度；  （四）国家外汇管理局及其分局、外汇管理部规定的其他条件。  **第四条** 符合规定条件的境内企业集团可由集团总部或指定一家参与的境内成员公司作为主办企业，由其负责按照本办法规定，对所有参与的境内成员公司存放境外的出口收入实行集中收付。  **第五条** 境内企业开立用于存放出口收入的境外账户（以下简称境外账户）前，应当选定境外开户行，与其签订《账户收支信息报送协议》（以下简称《协议》，见附1），并到所在地国家外汇管理局分支局（以下简称外汇局）办理开户登记。  **第六条** 境内企业集团实行集中收付的，应由主办企业到其所在地外汇局办理开户登记。主办企业与成员公司属不同外汇局管辖的，成员公司应事先到其所在地外汇局进行资格登记。  **第七条** 境内企业应当持下列材料到所在地外汇局办理开户登记：  （一）法人代表或其授权人签署并加盖企业公章的书面申请；首次登记时，书面申请中应当说明境内企业根据实际需要确定的年度累计出口收入存放境外规模；  （二）《出口收入存放境外登记表》（见附2）；  （三）境内企业与境外开户行签订的《协议》；  （四）境内企业为实施出口收入存放境外运作而制定的内控制度（首次登记时提交）；  （五）实行集中收付的，首次登记时还需提交参与成员公司情况说明、参与成员公司债权债务及相应会计记账管理办法或规章；成员公司与主办企业属不同外汇局管辖的，还需提供成员公司所在地外汇局出具的《出口收入存放境外资格登记表》（见附3）；  （六）国家外汇管理局及其分支局要求的其他材料。  **第八条** 境内企业开立境外账户后，应在规定期限内将账号和账户币种报所在地外汇局备案；境外账户信息发生变更的，应在规定期限内将变更信息报所在地外汇局备案。  **第九条** 同一境内企业开立的境外账户不得超过5个，特殊情况下需增加境外账户数量的，应当经所在地外汇局核准。  **第十条** 境内企业年度累计存放境外资金不得超出已登记的出口收入存放境外规模。需提高存放境外规模的，境内企业应向所在地外汇局进行变更登记。  **第十一条** 境外账户的收入范围包括：  （一）出口收入；  （二）账户资金孳息；  （三）外汇局批准的其他收入。  支出范围包括：  （一）货物贸易项下支出；  （二）境外承包工程、佣金、运保费项下费用支出；  （三）与境外账户相关的境外银行费用支出；  （四）经外汇局核准或登记的资本项目支出；  （五）调回境内；  （六）符合国家外汇管理局规定的其他支出。  **第十二条** 境外账户的收支应当具有真实、合法的交易基础，符合中国及开户行所在国家或地区相关法律规定。  **第十三条** 境内企业应当按照规定格式（见附4），向所在地外汇局如实报告出口收入存放境外收支情况，每个月至少报告一次。  存放境外资金运用出现重大损失的，境内企业应当及时报告所在地外汇局。  **第十四条** 境内企业应当要求境外开户行按照《协议》约定，按月向所在地外汇局指定的地址邮寄境外账户对账单。  **第十五条** 境内企业报告的出口收入存放境外收支信息可用于办理核销或核查手续。外汇局根据境内企业报告的相关信息和境外开户行对账单，对境外账户收支的真实性进行合理审查。  **第十六条** 境内企业可以根据自身经营需要确定出口收入存放境外期限，或将存放境外资金调回境内。  境内企业关闭境外账户后，应当在规定期限内持境外开户行的销户通知书向所在地外汇局备案。  **第十七条** 境内企业存在本办法第二十条第（一）、（二）、（三）、（四）项规定行为的，外汇局可责令其限期关闭境外账户，并调回账户资金余额。  **第十八条** 境内企业集团对存放境外出口收入实行集中收付的，应当做好参与成员公司债权债务的管理及相应的会计记账工作，清晰区分各参与成员公司的债权债务状况及金额。  存放境外出口收入调回境内的，应按照成员公司各自存款情况相应划入成员公司的境内经常项目外汇账户。  **第十九条** 境内企业应当保留与境外账户收支相关的交易合同、凭证等文件资料五年备查。外汇局对境内企业出口收入存放境外业务进行非现场监测，可对异常情况实施现场核查。  **第二十条** 境内企业存在下列行为的，外汇局按《中华人民共和国外汇管理条例》相关规定予以处罚：  （一）未经外汇局登记，擅自在境外开户存放资金的；  （二）提供虚假材料开立境外账户的；  （三）超出本办法规定的账户收支范围或违反本办法其他规定使用境外账户的；  （四）未按规定报送境外账户相关情况和数据的；  （五）未按规定调回或关闭境外账户的；  （六）违反本办法规定的其他行为。  **第二十一条** 国家外汇管理局可根据国际收支形势和外汇管理需要对出口收入存放境外的资格条件、存放规模、期限或调回要求等进行调整。  **第二十二条** 依法取得离岸银行业务经营资格的境内银行离岸业务部视同境外银行，适用本办法。  前款所称离岸银行业务部按照本办法规定吸收的境内企业出口收入，纳入外债统计；相应离岸账户与境内其他账户资金往来，按照跨境交易管理，并按照规定办理国际收支统计申报。  **第二十三条** 具有对外贸易经营权的个人与保税监管区域内企业不适用本办法。  **第二十四条** 本办法由国家外汇管理局负责解释。  **第二十五条** 本办法自2011年1月1日起施行。以前有关规定与本办法相抵触的，按本办法执行。  附1：《账户收支信息报送协议》  附2：《出口收入存放境外登记表》  附3：《出口收入存放境外资格登记表》  附4：《出口收入存放境外收支情况报告表》 |